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유학 안내 (Guide for Foreign Students)

I. 유학 절차

A. 본교가 요구하는 입학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입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학 자격

- a) 학사 학위(B.A.)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b) 석사 학위(M.A.나 M.Div.) 지원자는 B.A. 학위나 동급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입학 서류

- a) 입학원서
- b) 최근 사진 2매
- c) 신청비 \$100.00 (환불 불가)
- d) 추천서 2매
- e) 신앙과 장래 목표에 대한 진술서
- f) 성적 증명서

B.A. 지원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M.A., M.Div. 지원자: 고등학교 이후의 모든 성적증명서

B. 입학서류는 교무처에서 검토한 후 교수회의(입학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입학에 대한 허락 여부가 결정된다. 교무처로부터 입학 허락에 대한 통보를 받은 유학생은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I-20 Form) 발행을 학생처에 요청한다.

1. "I-20 Form"을 발행 받기 위해서는 I-20 Form 발급신청서(본교양식)를 작성하고 발급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유학생은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재정이 충분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충분한 재정 능력을 보이기 위해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을 제출하거나 본인의 은행 잔고가 모든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의 은행 잔고 증명과 재정보증서(본교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1년의 학비로 약 2,500-3,000불이 소요되며 생활비로 약 13,000불이 소요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3,000불씩 추가된다.

2.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유학생이 제출해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I-20 Form 발급신청서
- b)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이나 가족이나 친지의 은행 잔고 증명과 재정보증서(본교양식)
- c) 수수료 40불

3. 미국에서 신청하는 유학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I-20 Form 발급신청서
- b)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이나 가족이나 친지의 은행 잔고 증명과 재정보증서(본교양식)
- c) 여권사본
- d) 비자사본
- e) I-94 Form
- f) 수수료 40불

4.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 본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I-20 Form 발급신청서

- b)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이나 가족이나 친지의 은행 잔고 증명과 재정보증서(본교양식)
 - c) 여권사본
 - d) 비자사본
 - e) I-94 Form
 - f)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이전 학교의 I-20 Form
 - g) 이전 학교의 유학 담당관이 서명한 전출 동의서(본교양식)
 - h) 수수료 40불
- C. I-20 Form을 발급받은 후 F-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SEVIS Fee(100달러, 2007년 9월 현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밖에서는 우편을 통하여 지불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우편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I-901 Form(www.FMJfee.com)을 통해 이 양식을 받을 수 있음)과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
- D. F-1 비자는 미국 밖에서 신청할 경우 본교 발행 I-20 Form과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고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 신분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INS에 신청한다.

II.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안내

- A.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안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미국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유학생(F-visa),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J-visa) 등의 관리를 위해 만든 제도가 SEVIS이다. SEVIS는 F 비자(유학생)나 J 비자(교환교수 및 학생)를 가진 사람들을 컴퓨터 온라인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F, J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I-20 Form을 컴퓨터 온라인으로 연결된 INS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I-20 Student Copy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 I-20 Form에는 bar code가 있어 학생의 신분을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다. SEVIS에 입력된 정보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INS 본부(INS Head Quarter), INS 지부(INS District Office), 공항 입국 심사대(Ports of Entry), 각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교환교수를 철저히 컴퓨터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각 학교의 유학 담당관들에게 SEVIS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의 신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B. SEVIS I-20는 특정 학위 과정 시작 일에 맞추어 발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I-20라도 학위과정 시작 일까지 학생 비자 취득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위 과정 시작 일보다 30일 이상 일찍 입국할 수 없다.
 2. 입국 7일 안에 학교에 입국을 보고해야 한다.
 3. 입국 후 30일 안에 학과목 등록을 해야 한다.
- C. SEVIS에 보고하는 중요한 학생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출생지
 4. 본국 이름
 5. 본국 주소
 6. 미국 내 주소
 7. 비자 신분
 8. 학위 과정 이름

9. 시작일, 종료일
 10. 재정사항, 재정보증
 11.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
- D. SEVIS에 발생 여부에 대하여 보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는 SEVIS로 하여금 비자 신분 위반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지를 추적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매학기 등록 여부
 2. 이번 학기 종료일과 다음 학기 개시일
 3. 전임(full-time) 유지 여부
 4. 실기/실무 연수 허락일
 5. 비자 신분 유지나 학업 성취에 실패한 경우
 6. 학생이나 배우자의 법적인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7. 범죄 혐의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내역
 8. I-20 양식에 명시된 학위 과정 종료일 준수 여부
- E. 보고 시한은 21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나누어진다.
1. 다음 사항들은 21일 이내에 SEVIS에 보고되어야 한다.
 - a)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을 정한 기간에 끝내지 못한 경우
 - b) 해당 학생이나 동반가족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거나 미국 거주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 c) SEVIS I-20에 기재된 날짜보다 일찍 졸업을 하는 경우
 - d) 학생이 범죄했을 경우
 - e) 기타 학생 신분과 관련하여 SEVIS가 학교 체류 신분 담당자(DSO)에게 요청한 사항
 2. 다음 사항들은 30일 이내에 SEVIS에 보고되어야 한다.
 - a) 전임 학생으로 등록을 하였다가 학과목을 취소하여 전임(full-time) 학점이 미달된 경우
 - b) 다음 학기 시작일
- F. 비자 신분의 요건과 유지
1. 비자 신분은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분 이탈을 의미하며 자동적으로 신분이 종료되며, 앞으로의 미국 입국 및 체류 계획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은 특정 비자 신분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과 신분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2. 학생 비자(F-1) 신분
 - a) 미국 밖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b) 학위 과정을 이수할 자격 요건이 있는 학생일 것
 - c) 일시적으로 학생으로서, 미국 내의 상설 교육기관에서 전임 학생으로서 공부하려는 목적만으로 입국하려고 할 것
 - d) 다른 학교로 옮기는 절차를 완결하여 새 I-20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받은 I-20에 명시된 학교에서만 공부할 것
 - e) 학비와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있을 것
 - f)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향이 있을 것
 - g) 학교에서 정한 대로 자신의 학위 과정에 관련한 전 학업을 수행할 것
 - h) 전임 학생 이수 학점 규정(full-time)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학교 체류신분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심사해서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수 규정 이하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일 안에 이수 규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함
 - i) 학교에서 학업이 진행되는 학기 동안 교내에서 최대 주당 20시간 일하는 것 외에는 입학 첫 1년간은 일 할 수 없음.
 - j) 첫 1년 이후에는 교내 근무는 동일하게 주당 20시간이 최대이며, 학교 밖에서는 DSO(교내

체류신분 담당자)의 인가 하에서만 가능함(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육 실무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나 선택적 실무 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일을 시작하기 전에 DSO나 SEVIS, 필요한 경우 INS에 신청서를 내고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를 옮길 경우, 먼저 학교의 노동 허가서 기간이 유효하더라도 새 인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k) F-2 신분의 동반가족은 어떤 경우라도 F-2 신분으로 있는 한 일할 수 없다.

3. 위에 언급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신분 이탈이 되며 위반이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추방된다. 자신이 위반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학생처로 연락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신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4. 방문자(Visitors: B-1 사업방문자; B-2 여행 방문자)는 어떤 경우라도 본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 방문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한 경우라도 이민국으로부터 학생 비자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에만 본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G. 해외여행 시 주의할 사항

1. 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DSO가 서명한 I-20 서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2. 이민법과 SEVIS의 규정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출발 2주 전에 학교의 DSO에게 보고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여권에 찍힌 비자 기간이 초과된 경우 I-94와 I-20 Form이 유효하면 재입국을 위해 해외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여권 상의 비자 기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캐나다나 멕시코의 인근 도시나 접경 지역에 30일 이하로 다녀올 경우 I-94, I-20가 유효할 경우 자동적으로 비자에 재인가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승인되어야 재입국할 수 있다.
4. 여행을 마치고 재입국한 후 학생처에 보고해야 한다.

H. SEV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민국은 새롭게 적용되는 SEVIS 시스템에 대한 모든 내용을 website에 게시하여 알려주고 있다. BCIS(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ebsite는 www.bcis.gov이며 관련된 분야는 “hot topics”아래 실어 놓고 있다.

I. 미국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Classification(체류 유형): 인가를 받은 체류 유형
예: F-1 (학생), F-2 (F-1 학생의 동반 가족)
J-1 (교환 학생/교수), J-2 (J-1 교환 학생/교수의 동반가족)
2. Status(체류 신분):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체류 유형을 말하며 이민법을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민법은 다른 체류 유형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을 입국했을 때의 체류 유형을 항상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3. Non-Immigrant Visa(비이민 비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입국할 자의 여권에 날인해 주는 증명이다. 비이민 비자는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4. I-94(입국 날인): 미국에 입국했을 때 받은 흰색 혹은 녹색의 카드인데, 여기에는 번호와 입국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입국한 날짜와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 이 카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다. I-94 카드에 찍힌 출국 날짜보다 하루라도 초과하여 체류하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상실하고 불법 체류가 된다. 출국 날짜보다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이후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5. D/S(조건부 체류 신분 지속): 보통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I-94에 출국날짜 대신 D/S라는

날인을 받는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줄임말로써 학생 혹은 교환 방문자 체류 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뜻한다. I-94 카드에 D/S 날인을 받은 사람은 출국 날짜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3년/10년 재입국 금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D/S 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 체류 절차 진행 중에 INS나 이민국 심사관이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 일로부터 180일 혹은 1년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하고 초과 체류할 경우 3년 혹은 10년의 재입국 금지의 조치를 받게 된다.

6. Designated School Official(DSO 학교 체류신분 담당자): 미국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 인정한 해당학교에서 유학생 체류 신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I-20 Form 발급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녀		
출생국가				국적			
본국 주소							
미국 주소							
연락 전화							
동반 가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국	국적	관계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학위과정	BA, MA, MDiv		학업기간				
현재의 비자							
첨부 서류 I (모든 학생)	(1) 본인의 은행 구좌 잔고 증명 혹은 (1) 재정보증자의 은행 잔고 증명과 보증서(본교양식)						
첨부 서류 II (비자 변경 신청 학생)	(2) 여권사본 (3) 비자사본 (4) I-94						
첨부 서류 II (전입 학생)	(2) 여권사본, (3) 비자 사본, (4) I-94, (5) 전출학교 I-20, (6) 전출학교 유학담당관의 전출동의서(본교양식)						
수수료	\$40						
참고 사항	SEVIS Fee(현재 \$100)는 I-20 Form을 발급받은 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www.FMJfee.com 을 접속하여 안내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로 바로 지불하거나 I-901 form을 다운로드받아 인쇄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우편으로 fee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는 방법이 있음. I-901 Student/Exchange Visitor Processing Fee P.O. Box 970020 St. Louis, MO 63197-0020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I-20 Form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재정보증서 (국제개혁대학교)

Personal Information:

학생 Student	이름 Name	(한)	(영)
보증인 Sponsor	이름 Name	(한)	(영)
	직업 Occupation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관계 Relationship	학생의 ()	

Declaration of Student:

I have read the estimated budget for undergraduate/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I understand that my admission to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s contingent upon my ability to pay all my expenses during my attendance. I understand that U.S. Immigration requires that I show proof to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of my financial ability to pay these expenses. I also understand that I am required by law to show proof of finances to cover my first year of study. I understand also that if I cannot meet my financial obligations, or if it becomes evident that I have given false information in this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I may be withdrawn from the school.

학생 서명(Signature of Student) _____ 날짜(Date) _____

Declaration of Sponsor:

I have read the estimated budget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agree to financially support the above-named student as follows.

보증기간 Supporting Years in Total	총 _____ 년
매년 후원 보증 금액 Supporting Amount per Year	US \$ _____

보증인 서명(Signature of Sponsor) _____ 날짜(Date) _____